

의안번호	제 417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월 일 (제 회)

2016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6년 6월 29일

2016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41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년 6월 29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산업단지 부지 매입을 위한 비용 2,382백만원 및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4백만원을 지출계획에 계상하고자 함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에 따라 2016년도 충청북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)

기금명	2015년도말 조성액	2016년도 운용계획				2016년도말 조성액
		당초		변경		
		수입	지출	수입	지출	
투자진흥기금	2,399	41	0	1,978	2,386	1,991

3. 의안전문 : 불임(2016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)

4. 관계법령 발취 : 불임

□ **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**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 - 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-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[개정 2015.7.24.]